

2016.11.02

'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' 안내

1. 공고 이유

관세청은 특정 요건을 갖춘 수출입자에 대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여 통관 절차 상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고자 **'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'를 공고**하였습니다.

2. 관련 법령 및 대상 수출입자

관련 법령	대상 수출입자
전파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전기용품안전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화학물질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○ 「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
방위사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